

【논문】

지구화시대의 인권과 국가주권:*

코소보 사태에 관한 하버마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주 정 립**

【주제분류】 현대정치철학

【주요어】 인권, 국가주권, 인도적 개입, 코소보 전쟁, 도덕화

【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코소보전쟁을 계기로 제기된 ‘지구화시대의 인권(세계시민권)과 국가주권’의 문제, 그리고 이와 결부된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 하버마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우선 전쟁을 둘러싸고 전개된 논란이 짙막하게 고찰된다. 여기서 특히 검토되는 것은 하버마스가 담론의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 믿고 있던 개입의 찬반론자들이 공히 ‘유리처럼 명료한 규범적 언어’를 사용했고 공론장의 논쟁에서 ‘감정에 치우친 어조’를 찾아볼 수 없었는가 라는 점이다. 이 점에서 하버마스의 믿음은 당시의 언론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임이 밝혀질 것이다. 다음으로는 하버마스의 정당화 시도 자체가 비판적으로 검토된다. 이는 하버마스 자신이 제시한 기준을 전쟁의 실제적 경과와 대비시키는 것을 통해 시도된다. 또한 하버마스가 논적으로 삼은 칼 슈미트 자신의 논지를 통해 하버마스 주장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코소보전쟁이 남긴 결과와 그것이 인권과 국가주권의 앞날에 대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가 비판적으로 고찰된다. 코소보사태 이후의 발전들은 하버마스가 기대하는 세계시민권의 세계법적 정착이 아니라 국제질서의 규제되지 않는 ‘자연상태’로의 후퇴가 인류가 당면한 현실임을 예감케 한다.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02-A00028).

**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I. 문제제기

1999년 4월 말경 하버마스는 독일의 영향력 있는 시사 주간지 『디 짜이트』에 “야수성과 인간성”이라는 제하의 글을 실었다.¹⁾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제2세대를 대표하는 사회철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주요한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표명을 함으로써 ‘담론을 통한 계몽’이라는 자신의 이론적 신조에 충실한 실천적 지성으로서도 유명한 그는 이 글을 통해 세르비아에 대한 나토 국가들의 전쟁에 대해 입장표명을 시도한다. “야수성과 인간성”이라는 제목은 칼 슈미트의 테제 “인간성, 야수성”을 형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뒤집는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슈미트는 주권국가 내에서, 그리고 주권국가들 사이에서 전개되는 권력투쟁을 인간적 기준에 맞추려 하는,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만들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그것은 필연적으로 도덕화를 통한 야수화를 낳을 것이라 경고한다. “인간성을 논하는 자는 속일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인권정치야말로 원래 중립적인 국가이성을 ‘도덕화’하려는 시도를 통해 국가들 사이의 자연발생적 투쟁을 절망적인 ‘악과의 투쟁’으로 타락시킨다”는 것이다(Habermas, 2001, 32-33).

이에 반해 하버마스는 “세계시민적 상태”라는 칸트의 전망을 견지하면서 정치적인 것에 인권존중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것을 문명화한다는 지난한 과정이 국제정치와 국제법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주장한다. 그러한 하버마스에게 나토 국가들이 세르비아에 대해 벌이는 전쟁은 이러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걸음을 의미한다. 이 전쟁에의 참전을 결정한 독일의 적녹 연정 정부의 “법적 평화주의(legal pacifism)”는 “국가들 사이의 자연상태를 인권존

1) 여기서는 2001년에 발행된 단행본에 수록된 것(Habermas, 2001, 27-39)에 따라 인용함.

중의 방향으로 길들인다는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써 국제법의 세계시민법으로의 전환이 당면 의제로 제기된다. 법적 평화주의는 주권국가들 사이의 잠재된 전쟁상태를 국제법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법제화된 세계사회적kosmopolitisch 질서 속에서 지양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통은 칸트로부터 켈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도 있어 왔다. 그러나 그것이 독일 정부에 의해 진지하게 고려되는 것은 오늘날이 처음이다. 세계시민들의 연합의 직접적 성원이라는 사실이 국가시민을 그 자신의 정부의 자의에 대해서도 지켜줄 것이다.”(Habermas, 2001, 27-28) 나토의 군사적 개입이 의도하는 목표는 “세르비아 내에서의 코소보 자치를 위한 자유로운 해결을 관철시킨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고전적인 국제법의 규약에 따르면 내정간섭에 해당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것이 “인권정치적 전제” 하에서는 다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입은 무력을 통한, 그러나 (UN으로부터의 위임이 없더라도 암묵적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평화창출 임무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하버마스는 이 전쟁에 “국가들 사이의 고전적 국제법이 세계시민사회의 세계법으로 가는 도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도약”이라는 역사적 의미까지 부여한다. 그러므로써 UN 창설과 더불어 시작된, 그리고 걸프전과 그 이후의 개입들을 통해 촉진된 발전과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그는 바라본다(Habermas, 2001, 29).

하버마스에 따르면 “동등한 공존에 대한 코소보인들의 요구와 잔혹한 추방이라는 불의에 대한 분노”가 군사적 개입의 도덕적 동기들을 이루는데 바로 이것들이 군사적 개입에 대해 “비록 차이가 있기는 하나 광범위한 동의를 보장해 주는 것이었다.”(Habermas, 2001, 30) 이 동기들이 단지 구실들만이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정황으로 하버마스는 개입의 찬반론자들이 공히 “유리처럼 명료한 규범적 언어”를 사용했고 공론장의 논쟁에서 “감정에 치우친 어조”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무엇보다 공습을 통해 민간인들의 희생을 줄이고자 노력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Habermas, 2001, 27).

물론 군사적 행위자의 “선의”에 대해 하버마스가 이처럼 명확히 제공한 “규범적 신용”(Blanke, 1999)은 무조건적이지 않다. 우선 그는 협상을 더 벌여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자신들의 우세한 화력을 더 신뢰하는 미국과 영국에 대해, 특히 미국의 “권력정치”에 대해 완곡하게나마 유보적 입장을 취한다.²⁾ 뿐만 아니라 하버마스는 뒤에서 볼 수 있듯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건들과 유보사항들을 고려하고 있다. 하버마스의 의혹을 사는 것으로는 “무력침공 외에 다른 대안을 허용치 않은 협상전략이 현명했는가”라는 점과 “군사적 공격의 합목적성”, “군사적 수단의 적정성”, 그리고 “애매해져버린 정치적 목표” 등을 들 수 있다(Habermas, 2001, 30-31).

그러나 어쨌든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담론”의 주창자로 유명한 철학자가 군사적 무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쟁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 여러 가지 유보조건을 내걸며 신중함을 잃지 않고는 있으나 —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한다는 사실은 일견 당혹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그의 정당화 시도는 심각한 도덕철학적 문제들을 안고 있지는 않은가? 인권을호와 같은 도덕적인 원칙들을 필요하면 — 심지어 무관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 무력을 써서라도 관철시킴으로써 준수하게끔 한다는 것이 도덕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일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 담론 참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하버마스 자신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손상시키는 일로서 그가 관철시키고자 하는 도덕적 원칙들이 아무리 숭고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으로 인해 그 가치가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것은 아닐까?³⁾ 스스로 획득된 확신과 근거에 대한 통찰에 의거한 존중을 통

2) 이에 반해 “대부분의 유럽연합 정부들은 인권정책을 국제관계의 철저한 법제화 기획으로 이해하며, 이러한 기획은 오늘날 이미 권력정치의 매개변수들을 바꾸고 있다”고 하버마스는 바라본다(Habermas, 2001, 36).

3) 하버마스의 동료인 아펠은 이와 관련 세계시민권에 대한 선취적 행동의 필요성을 책임윤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인권의식에 부과된 과제이며 이러한 인권의식은 “문제해결의 담론적-의사소통적 절차가 상호적인 협력태세의 결핍으로 인해 불가능할 경우 폭력에 대한 대항폭력의 부담을 짊어질”

하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도덕적 원칙들에 대해 효력을 부여하겠다는 생각은 이미 그 단초부터 도덕적 문장의 유효성에 대한 하버마스 자신의 이론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아닌가? 근본적으로 평화주의적인 도덕의 담론이론으로부터 ‘무력개입을 통한 도덕원칙의 관철’론을 잇는 교량이 논리적으로 가능할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해답을 찾는 일은 이 글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과제가 될 것이다. 기껏해야 이 글의 마지막에 가서 그것들에 대해 단지 부분적인 대답이 가능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여기서 검토하려는 코소보전쟁에 대한 하버마스의 논지와 관련해서 우선 다음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큼은 필요할 것 같다. 즉 하버마스는 『사실성과 타당성』과 같은 90년대의 법이론적인 연구를 통해 법의 합리성과 법과 도덕 사이의 차이 등을 규정하려고 시도하면서 예전의 도덕 이론에 특징적이었던 이상적 전제들에 현실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도를 고려할 때 비로소 무력개입을 통해서라도 인권을 관철시켜야 하며 이는 세계시민권의 확립을 향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그의 주장도 이해될 수 있겠다. 그의 법이론에 따르면 세계 인권선언이나 민주적 헌법들과 비교해 뒤쳐져있는 국제법의 현 상태는 실증주의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열린 기획의 한 단계이며 이는 기존의 국제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조치들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치들에는 UN제도들을 민주주의와 인권향상의 관점에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시도들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무력개입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코소보 개입과 관련된 하버마스 주장의 핵심인 것 같다(Blanke, 1999).⁴⁾

아래에서는 코소보전쟁을 계기로 제기된 ‘지구화시대의 인권(세계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고 주장한다(Apel, 2001).

4) 하버마스의 담론이론과 인권, 주권, 민주주의 개념의 복합적 관계에 대해서는 참조(박구용, 2003, 185-211). 하버마스의 담론윤리 이론에 대해서는 참조(Habermas, 1984, 76-78, 103; 1991, 152-159).

시민권)과 국가주권'의 문제, 그리고 이와 결부된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 하버마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전쟁을 둘러싸고 전개된 논란을 일별하고자 한다. 여기서 특히 검토되어야 할 것은 하버마스가 담론의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 믿고 있듯 개입의 찬반론자들이 공히 '유리처럼 명료한 규범적 언어'를 사용했고 공론장의 논쟁에서 '감정에 치우친 어조'를 찾아볼 수 없었는가 라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하버마스의 정당화 시도 자체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는 하버마스 자신이 제시한 기준을 전쟁의 실제적 경과와 대비시키는 것을 통해 시도될 것이다. 또한 하버마스가 논적으로 삼은 칼 슈미트 자신의 논지를 통해 하버마스 주장의 문제점이 지적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소보전쟁이 남긴 결과와 그것이 인권과 국가주권의 앞날에 대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가 비판적으로 고찰될 것이다.

II. 나토의 무력개입을 둘러싼 논쟁

1. '인도적 개입'의 정당화를 위한 선전: '적'의 '악마화'

유고에 대한 나토의 공습은 나토가 벌인 최초의 전쟁이었으며 방위동맹의 애당초 목적과는 거리가 먼 '인도적 개입'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정당화가 요구되는 사안이었다. 민주적 공화정의 자율적 시민들은 방어전쟁이 아니면 전쟁수행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칸트의 견해가 아니더라도 지난 세기 전쟁의 참화를 되새기며 반세기 이상 평화를 유지해 온 유럽인들에게 유엔의 승인 없는 전쟁에의 참여를 설득하는 것은 일견 가망 없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공습은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결정되었다. 이러한 지지 여론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물론 텔레비전을 위시한 대중매체들이었다.

공습이 결정되기 전 전쟁에 대한 찬반논란이 한창 가열되는 가운데 사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 대신 전쟁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조제된’ 정보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널리 유통되었다. 이러한 정보들은 대부분 코소보의 무고한 알바니아인들이 세르비아인들에 의해 폭력적으로 추방당하고 있으며 세르비아인들이 얼마나 잔혹한가를 ‘입증하는’ 것들이었다. 세르비아 가족들이 코소보의 다수를 차지하는 알바니아인들에 의해 억압받는 사례나 코소보 해방군이 민간인들에 대해 잔혹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조직이라는 사실 등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세르비아인들의 야만성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⁵⁾ 그 객관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채 국영방송을 탈 만큼 편파적인 언론 환경 속에서 나토가 코소보 전쟁에 선행하는 전사와 전쟁목표들에 대해 내놓은 공식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세르비아 정부는 코소보 지역의 다수주민인 알바니아인들을 탄압하기 위해 1989년 이래 이들을 차별하는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해왔다. 심지어는 이 지역의 완전한 인종청소를 위한 계획들이 세워졌다. 급기야 1999년 초 코소보인들에 대한 대량학살이 개시될 조짐이 뚜렷해졌다. 이러한 파국을 막기 위한 비군사적 수단들은 모두 소용이 없었다. 나토는 코소보 알바니아인들에 대한 민족학살을 막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빌레Wilhelm Wille는 이러한 설명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한다. 우선 남아프리카식의 아파르트하이트체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코소보에서는 그간의 역사 속에서 양쪽 모두 고통스런 경험을 하였으며⁶⁾ 코소보 알바니아인들은 남아공의 흑인들처럼 사회적,

5) 함부르크 대학의 평화문제 및 안보정책 연구소의 루츠는 독일 국영방송 ARD가 전쟁관련 보도 속에서 세르비아인이 알바니아 가족이 보는 앞에서 아기의 팔다리를 잘라 꿰는 솜에 집어던졌다는 알바니아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전달한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Lutz, 1999).

6) “4월서부터 가을까지 코소보에서는 들판에 불이 질러졌고 약탈이 자행되었다. (...) 나는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난민들의 비참한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

정치적 과정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1998년 3월 발발한 코소보 내전의 전사(前史)에는 코소보 해방군KLA의 게릴라 운동이 1996년부터 무대전면에 등장하며 머지않아 한 때 코소보 영토의 40%에 달하는 지역을 통제했다는 사실도 속한다.⁷⁾ 코소보 해방군은 처음에 코소보의 적지 않은 지역에서 세르비아의 공권력을 수세에 몰아넣기도 했으나 곧 세르비아 당국의 격렬한 반격을 맞게 된다. 빌레의 평가에 따르면 세르비아 보안당국이 이 단계에서 코소보 게릴라에 대해 수행한 전쟁은 미국이 베트남에서 베트남에 대해 수행한 것과 비슷한 정도였다. 즉 세르비아 쪽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야만적’ 대게릴라전의 성격을 띤 것이었으나 군사적 개입의 이유로 제시된 야만성의 ‘수위’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빌레는 나아가 1998년 10월 13일의 홀브룩 협정 이후 세르비아 군과 특수경찰이 합의된 대로 대체로 코소보로부터 철수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나토와 OSCE(유럽안보협력기구)가 협정의 준수를

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기억을 잊을 수 없다. 이들은 챙겨 온 가재도구들을 수레로 끌고 가거나 등에 진채 나르고 있었다(…)” 이는 1940년대에 현지지를 방문한 이탈리아의 농경학자 G. Lorenzoni 가 작성한 “유고의 농업에 대한 보고”에서 인용한 것이다(Tommaso/Scotti, 1999).

- 7) 빌레는 코소보 인권상황에 대한 엠네스티의 보고가 다음과 같은 내용도 담고 있었으나 오랫동안 무시돼 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상황은 1996년 중반 이래로 바뀌었다. 이 시점서부터 경찰서와 경찰관에 대한, 그리고 당국과 협력하든지 당국을 위해 일한다는 혐의를 받는 코소보-알바니아인들에 대한 공격이 증가한 것이다.”(Anmesty International, 1998, 44: Wille, 2000 으로부터 재인용) 코소보의 인권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해오며 경고음을 발하던 엠네스티가 군사적 개입에 대해 입장표명을 유보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한 사실은 이러한 경고음을 무시하던 대부분의 언론과 정치인들이 ‘단호하게’ 군사적 개입을 요구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물론 NGO 중에는 ‘위협 받는 민족들을 위한 협회’와 같이 군사적 개입을 옹호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그러니까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분리전쟁이 발발한 이후 현지에서 활약해온 국제 NGO의 대부분은 갈등방지와 갈등해결이라는 의미에서 민간적 개입을 역설해왔으며 이에 대해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주민들로부터 괄목할 만한 기부금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Roth, 2000).

감독했으며 당시 나토 사무총장이던 솔라나 스스로가 세르비아의 규정 준수를 입증해주었다. 그런데 협정은 세르비아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이에 편승한 코소보 해방군은 신속히 세르비아가 비워준 지역으로 진입하여 갈등을 상승시켰다. 이들의 목표는 나토의 개입을 유발시키는 데 있었다. 빌레는 이와 관련 독일군의 나우만 장군이 후일 밝힌 말을 인용하고 있다. 나우만은 코소보 해방군이 “우리에게 홀브룩 협정의 성공을 맞아갔다. 이들은 세르비아인들의 철수로 생긴 진공상태 속으로 쳐들어갔으며, 아마도 우리 나라들 중 그 어떤 나라의 어느 누구도 용인하지 않았을 방식으로 확산되었다”고 고백했다(Wille, 2000). 무츠는 “평화보고서Friedensgutachten 2000”에 실린 기고문에서 “서방 여론은 가해자들이 아무 도발도 없었는데 수동적인 희생자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왜곡상을 끊임없이 받아들였다”고 지적한다. 그가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있어 근거로 제시된 자료는 첫 공습이 있기 전날의 다음과 같은 독일 국방성 상황보고였다. “코소보 해방군에 대한 세르비아-유고슬라비아 병력의 대대적인 합동공세가 코소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제까지 입증될 수 없었다. (...) 코소보 해방군 쪽에서는 익히 알려진 ‘치고 빠지기’ 전법을 통해 세르비아-유고슬라비아 병력이 대대적인 대응을 하도록 도발하려고 계속 시도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는 이러한 대응들의 결과 나토의 즉각적인 공습을 야기할 정도로 파괴와 난민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벌어질 것이다.”(Mutz, 2000, 60)

전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중의 하나는 세르비아인들이 코소보인들을 대대적으로 추방하기 시작한 것이 나토의 공습이 시작되고 난 이후의 일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상기되어야 할 점은 나토가 설정한 첫 번째 전쟁목표가 바로 이 추방을 막는다는 것이었다. 빌레는 이러한 추방행위가 오래 전서부터 준비된 것이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다고 지적한다. 독일 국방성은 세르비아인들의 그러한 행위가 알바니아인들의 게릴라조직인 “코소보해방군KLA을 무력화”하기 위한 작전계획으로 수행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도 베트남을 고립시키기 위해 민간인들을 대대적으로 이주시킨 바 있다.⁸⁾ 그렇다고 세르비아군의 전쟁범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러나 빌레가 지적하듯 여기서 윤리적 문제의 근원은 서구 여론의 과도한 ‘도덕화’를 통해 ‘악마’화된 세르비아인들의 사악함에 있다기보다 현대적 전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다.

유고에 대한 나토 공습전은 코소보에서 민족학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서구 언론의 보도는 이러한 사실의 신빙성에 대해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공습이 시작되고 며칠동안 미 국무부는 약 오십만 명이 세르비아인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추산했고 다른 곳에서는 삼십 오만 명이 추산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수는 십만 명으로 줄었으며, 다시 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마지막에는 이천 오백 명이 죽은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천 오백 명의 죽음은 그 자체로서 이천 오백의 불필요한 희생은 의미하지만 과연 공습결정의 이유로 거론된 민족학살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일까? 나토의 공습으로 인해 죽거나 나토의 점령이후 발생한 정치적 보복으로 살해당한 자들은 나토가 책임져야 할 희생자들일 텐데 빌레에 따르면 이들의 수도 그 정도 규모는 될 것이라고 한다(Wille, 2000).

결론적으로 나토의 공습을 전후해 서구 국가들에서 이루어진 언론 보도들은 공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부 및 개입옹호자들의 입장을 거의 일방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주민들이 전쟁수행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하랄드 뮐러는 최근의 전쟁들에서 서구 언론이 정부의 “애완견”으로서 수행한 역할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그대로 나토의 대유고 전쟁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전쟁 찬성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언론은 대상지역에서 일정한 민족이나

8) 타리크 알리 역시 이러한 소개작전이 “말레이 반도, 알제리, 베트남 등에서 사용된 서방의 반란진압 전술과 매우 유사하다”고 바라본다(알리, 2000, 15).

종교집단에 대한 집단학살의 징후가 있음을 환기시킨다. 이와 더불어 공격을 받아야 할 ‘가해자’에 대한 ‘악마화’가 진행된다. “지난 전쟁들과 관련한 대중매체 분석들은 정치적 갈등의 인물화에 대한 강한 충동을 계속 강조해왔다. 결국 인물묘사가 선과 악이라는 축을 따라 양극화하는 현상이 나타난다.”⁹⁾ 또한 정부와 언론은 묵과할 수 없는 악을 막아내기 위해 군사적 개입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을 역설한다. 불가피하다는 느낌을 갖는 데 기여하는 것은 매체 분석에서 “마찬가지로 자주 비판의 도마에 오르는 문화적, 민속적 차이의 상투화와 본질화”이다. 문화적, 민속적 정체성은 역사적으로 생성된 것이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매체에서는 마치 똑같은 상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수백 년간의 변함없는 갈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묘사된다. 정부와 언론은 또 군사적 개입이 커다란 위험 없이 치러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이나 상대방이 효과적인 역공을 취할 가능성을 가급적 경시한다. 정부와 언론은 개입 동기의 순수성을 부각시키면서 그 배후에 놓인 저의에 대해서는 침묵한다.¹⁰⁾ 이러한 언론 환경 속에서 전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담론은 ‘인도적 개입’의 효용이나 도덕적 성격에 대한 충분히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검토를 가능하게 해 줄 “이상형”으로부터 매우 동떨어진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9) “밀로세비치는 나토국들의 정치계급과 여론에게 일종의 강박관념이 되어 버렸다.”(Altvater, 1999, 71) 악마시되는 적은 종종 20세기가 낳은 최대의 정치적 ‘악마’, 히틀러와 동일시된다. 독일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나토의 공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코소보에서의 인도적 재난을 홀로코스트와 비교하는 ‘무리수’까지 두었다.

10) 뮐러는 언론에서 침묵한 열강들의 “저의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과 더불어 다시 주권을 회복하고 나서 이제 유럽의 다른 중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지위에 대한 이해관계’, 유럽국들의 경우 군사적 행위를 통해 국제정치의 주요한 행위자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욕구, 나토의 경우 소련이라는 주적의 소멸 이후 존재(이유)를 입증하고자 하는 욕구, 미국의 경우 초강대국으로서 제기하는 헤게모니 요구 등이 그것이다 (Müller, 2002).

(Müller, 2002).

2. 무력개입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

코소보 주민들에 대한 극심한 인권유린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수행되었다는 나토의 세르비아에 대한 전쟁은 나토국가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친세르비아적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야기될 정당성의 심각한 손상을 피하기 위해 유엔 위임 없이 벌인 전쟁이다. 이는 비록 도덕적 명분 위에 서 있으나 어쨌든 유엔의 승인 없는 공격전쟁을 금지하는 기존의 국제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다. 자기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인도적 개입’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집단적 평화보장을 위해 자의적 무력사용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유엔 체계의 근본정신과 배치된다. 이는 또 각국의 헌법 정신과도 위배된다. 독일의 경우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은 국가방위를 위한 전쟁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독일이 속해있는 나토의 방어임무를 위해서만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 게다가 독일통일을 국제적으로 승인한 2+4 조약은 “통일독일이 그 헌법과 유엔헌장에 합치되는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무기를 투입하지 않을 것”임을 명기하고 있다 (Denninger, 1999).

그러나 인권수호를 위한 무력개입 구상이 갖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사유형태 자체에 놓여 있는 것 같다. 이에 따르면 인권침해가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전쟁이 마지막 수단이며 손상된 권리를 복원시킨다는 목표에 엄격하게 제한된다면, 그리고 투입된 수단의 적정성이 지켜진다면, 공격전쟁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소보 전쟁은 이러한 조건들과 관련, 자의의 위험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자의는 전쟁이 ‘정의로운 전쟁’의 외투를 쓰고 치러질 경우 더욱 더 정치적으로 통제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Brock, 2000).¹¹⁾

11) 9.11 테러가 일어난 후 2002년 2월 마이클 월저(Michael Walzer)를 포함한

나토의 무력개입이 기존의 국제법에 의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쟁의 정당성은 대부분의 경우 법 위에 서는 ‘도덕’을 통해 주장되었다. 따라서 전쟁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은 주로 전쟁의 도덕적 차원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여기서 개입의 합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논의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슈람메(Thomas Schramme)가 지적하듯 개입이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며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라는 문제이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결과일 것이다. 개입 옹호자들의 반복되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유감스럽게도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실 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자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도덕적 원칙과 이러한 도움으로 인해 무고한 자에게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또 다른 도덕적 원칙이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딜레마에 놓이기가 쉽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개입 옹호의 선명한 논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부재함을 반증해주는 것 같다.

개입 옹호자들은 무고한 민간인이 겪는 피해가 개입당사자에 의해 비록 예견되긴 했으나 의도되지 않은 개입의 결과이며 따라서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소위 ‘이중결과의 원칙’이라 불리는 논리가 정당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한다.¹²⁾ 우선 행위 자체가 선하거나 도덕적으로 중

60인의 미국 학자들은 “무엇을 위해 우리는 싸우는가”라는 글을 통해 미국이 수행하는 ‘테러에 대한 전쟁’에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윤리적 은총을 내린다. 정의로운 전쟁은 가능하며 이 전쟁은 그러한 전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언제 전쟁이 정의로울 수 있으며 누가 그러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 라는 기준을 제시할 수 없었다(Hauchler et al., 2003, 12).

12) ‘이중결과의 원칙’은 흔히 군사적으로 ‘부수적 피해(Kollateralschäden)’로 번역된다. 이 논리에 따르면 무고한 자를 해치거나 위태롭게 하는 것은 개입하는 쪽에서 비록 예견할 수는 있지만 의도하지는 않은 개입의 결과이다. 그러한 의도치 않은 결과는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인도적 개입의 경우 무고한 자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의무는 실제로는 전혀

립적이어야 한다. 둘째로, 예컨대 군사시설의 파괴라든가 침략자에 대한 공격과 같은 직접적인 결과는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로 나쁜 결과들은 그의 목표여서도 안 되며 목표를 위한 수단이어서도 안 된다.¹³⁾ 넷째로 좋은 결과는 나쁜 결과를 상쇄하기에 족할 만큼 좋은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행위자의 동기보다는 행위자체에 대한 평가일 것이다. 특히 의도되었건 의도되지 않았건 **예견될 수 있는 결과**가 본질적이다. 모든 것은 결국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라는 나쁜 결과가 곤경에 처한 자들의 구제라는 좋은 결과에 비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런 점에서 개입옹호자들은 정당성 부재라는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가 힘들 것이다. 나토군의 공습으로 코소보 난민이 오히려 급증하리라는 점, 공습은 세르비아 내의 반독재 민주화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세르비아 국민을 밀로세비치 정권 아래 단합시킴으로써 나토 공격에 대한 저항의지를 강화시킬 것이며 이를 이용해 밀로세비치가 코소보에서 커다란 희생자를 낼 수 있는 보복행위에 나설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일들이었다.¹⁴⁾

위반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Schramme, 2001).

- 13) 코소보전쟁에서 나토군이 독성이 강한 열화 우라늄탄을 사용한 일이라든지 세르비아 주민들의 저항의지를 꺾기 위해 민간시설을 의도적으로 폭격하려 한 일 등은 ‘이중결과의 원칙’의 정당성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당시 나토 사령관이던 클라크는 종전 후 한 텔레비전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밀로세비치가 조금만 더 늦게 항복을 했더라면 나토군이 세르비아의 기반시설을 가루로 만들었을 것이라 밝혔다. “우리는 식료품산업, 화력발전소를 파괴했을 것이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했을 것이다.”(Mutz, 2000, 63) 빌레는 이와 관련 “나토가 그 최고위층 스스로가 기막히게 예고한 전쟁범죄를 이미 저지르기 시작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Wille, 2000).
- 14) “코소보 전쟁의 그 악명 높은 ‘부수적 피해’에는 세르비아에서 민주적 반대 세력이 절멸된 사실도 속한다.”(Popov, 1999) 수년간 베오그라드에 살면서 발칸 문제를 보도했던 <보스턴 글러브>의 전 편집국장 랜돌프 라이언은 다음과 같이 썼다고 한다. “이제 나토 덕분에 세르비아는 하룻밤 사이에 광란의 전시 동원체제 속에 들어간 전체주의 국가가 되었다.” “밀로세비치

대부분의 개입 옹호 논리는 보편주의적 인권존중의 도덕원칙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결국 암묵적으로 공리주의적 논리에 의존하게 된다.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희생보다 구제의 ‘크기’가 크다고 예견될 경우 개입은 항상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공리주의를 통해 보편적 도덕원칙을 ‘보완’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은 무고한 희생자들에게 왜 그들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의 구제를 통해 정당화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는 데 있다.¹⁵⁾ 모든 사람이 이성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행위만을 수행한다는 것이 보편주의적 존중의 도덕의 근본전제라면 커다란 부수적 피해가 예상되는 인도적 개입의 경우 이러한 전제를 충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케르스팅도 만약 군사적 개입에 있어서 “부수적 살인”이 어쩔 수 없이 감수될 수밖에 없다면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개입행위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본다. “생존권의 관철을 위해 애쓰는 개입주의라 하더라도 ‘부수적 살인’의 방지라는 기준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Kersting, 2000, 225)

더군다나 갈등의 양상이 너무도 복잡하여 가해자와 무고한 자를 구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경우, 그리고 개입 당사자가 자신의 희생을 극소화하려는 데 급급할 경우 개입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희생자를 돕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Schramme, 2001).¹⁶⁾

는 코소보에서의 공격을 배가시키면서 즉각적인 보복을 가할 것이고, 나토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으리라는 점을 틀림없이 알았을 것이다.”(츨스키, 2001, 70-71에서 재인용)

- 15) 하버마스도 자신의 담론윤리를 설명하면서 “중립적 관찰자의 입장” 가운데 하나인 공리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러한 입장이 지닌 “특권적 지위는 관찰자를 분쟁 당사자들의 주관적 관점이 담긴 해석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만들어줄 것을 약속함으로써 처음에는 장점을 지닌 듯 보이지만 관찰자를 독백상태 속에서(monologisch) 관련자들의 해석지평들로부터 단절시키고 그에게 오직 내부로부터만 열릴 뿐이며 주체 상호간에(intersubjektiv) 공유되는 도덕적 세계로의 해석학적 접근을 차단시킨다는 단점을 초래한다.”(Habermas, 1991, 153: 이탤릭체 강조는 원문의 것임)

III. 코소보 전쟁: 세계시민권으로의 도약인가, 또는 자연상태로의 후퇴인가? 하버마스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하버마스는 ‘탈국민국가적 상황’ 속에서 점점 더 요구되는 세계시민권이 아직 제대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는 평화창출이나 평화유지를 위한 조치들의 정당성과 효율성이 괴리될 수 있다는 데에서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스니아 전쟁에서 유엔의 승인을 받은 행동은 스레프레니차의 유엔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대량학살이 보여줬듯 효과적이지 못했다. 반면 코소보 전쟁에서 유엔의 승인 없이 행동한 나토는 세르비아 정부를 효과적으로 압박했다 (Habermas, 2001, 35).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나토국가들은 치안이 부재한 곳에서 공권력을 대신 집행하는 자경단과 같이 행동했다고 볼 수 있다. 하버마스는 바로 이러한 선취적 행동을 통해 이제껏 부재했던 질서가 비로소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것 같다. 나토 회원국들은, 만약 지금 벌써 독자적 제도들이 성립해 있다면, 이것들에 귀속될 해석권과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나토국가들이 이 제도들을 대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은 후견인처럼 paternalistisch 행동하고 있다. 그것은 도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16) 다른 방식으로 흔히 거론되는 것들로는 희생자에 대한 무기지원을 통해 자위력을 증강시키는 방식, 인도적·경제적 지원 방식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들일 것이다. 이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소수민족 고등판무관인 Max van der Stoep의 계산에 따르면 그의 8년 재임기간 중 동유럽국들에서 수많은 소수민족 갈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폭력사태 발발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이에 든 비용이 2기의 크루즈 미사일 구입비용보다 적었다.”(Czempiel, 2001)

나토가 행사한 무력에 법적 강제성의 성격을 부여하기에는 부족하다. 하버마스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후견인적인 긴급구호가 민주적 이웃국가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Habermas, 2001, 37-38). 하버마스의 논의로부터 우리는 정당성이 부재한 인도적 개입이 세계시민적 법질서를 선취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규제되지 않는 무법적 국제질서로의 후퇴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얻을 수 있다. 그것들에는

- ㄱ) 무력개입은 갈등해결의 민간방식들이 효력이 없음이 드러난 후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 ㄴ) 개입은 자신의 오류가능성과 공정한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특별한 의식 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 ㄷ) 개입은 예외적 경우이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개입은 장래에 비슷한 경우를 피하기 위한 배전의 노력이 기울여지는 계기가 되어야만 한다.

등이 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코소보사태에 대한 나토의 개입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우선 군사적 개입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이 기울여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다. 나토국들은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 중국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Wille, 2000). 클린턴 정부의 적어도 일부에 있어 군사개입은 1998년 초부터 이미 유일하게 적절한 선택으로 굳어져 있었던 것 같다. 이와 관련 클린턴 정부의 대 유엔 정책은 점점 미국이 유엔의 원칙에 동조하지만 유엔에 의해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기울어진다.¹⁷⁾ 전쟁 개

17)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강력하게 추진된 나토 확대 정책에서 미국이 의도했던 것은 아마도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증대와 러시아와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무력화였을 것이다(Müller, 2003, 45).

시 이전에 OSCE의 감시인단이 사태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토국들은 밀로세비치도 동의한 3,000명의 감시인단 구성에 실패하고 만다. 1999년 2월 시도된 마지막 외교적 해결노력인 랑부예 협상은 성사되는 것보다는 무산되는 것이 나토 측의 목표였을 거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베오그라드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다.¹⁸⁾ 이러한 사실들은 전쟁 결정이 있기 전에 모든 민간적 수단이 시도되었다는 나토 측의 주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것 같다.

두 번째 기준인 공정한 통제의 필요성과 관련해 나토국가들은 국제적 차원에서 긴급구호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에 세르비아 정부가 제기한 소송을, 세르비아가 유고연방의 법적 후계자가 아니라는 형식적 이유를 들어, 무산시켜 버렸다. 옛 유고에서 자행된 범죄를 심판할 국제 법정이 좀더 정의로운 국제질서의 선구자임을 외쳐대는 미국은 자신의 불법행위를 심판할 개연성이 큰 국제사법재판소는 거부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하버마스가 지향하는 “국제관계의 철저한 법제화는 갈등해결의 확립된 절차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절차의 제도화야말로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으로 정제된 처리를 권리의 도덕적 무분별화Entdifferenzierung로부터 막아주고 무매개적으로unvermittelt 작용하는 ‘적’에 대한 도덕적 차별을 저지할 것이다“(Habermas, 2001, 34-35). 국제관계가 철저하게 법제화된 상태는 아직 요원할지 모르지만 나토의 개입이 하버마스가 생각하듯 ‘인권이 협소한 국민국가적 경계를 넘어 세계시민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위

18) 랑부예 협정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세르비아 측에 대해 세르비아가 주권을 행사하는 코소보 지역에 나토군을 주둔시킬 뿐만 아니라 나토군에게 유고 전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닌 점령군의 지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한 부분이었다. 세르비아 정부가 이러한 계획에 수긍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일이었다. 당시 미 국무장관이던 윌브라이트는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세르비아인들이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 막대높이를 올릴 것이다.”(Wille, 2000)

해서는 ‘긴급구호’를 위한 무력사용과 더불어 적어도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규범과 처벌 규정을 지닌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갈등해결의 절차’를 확립하는 첫걸음이라도 떼어졌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정당성 부재의 개입이 예외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기준의 준수도, 온건하게 얘기해, 불확실하다. 그것을 ‘선례’로 삼으려는 ‘유혹’이 엄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나토가 국제관계에 있어 강자의 권리를 부활하려 한다는 비난에 대해 코소보는 결코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버마스의 다짐은 도덕적 제스처로서 흠잡을 데 없으나 현실 앞에 무력한 것은 아닐까? 나토는 필요하면 앞으로도 유엔 안보리를 우회해 스스로에게 전쟁수행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전략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은가?¹⁹⁾

나토의 행동은 긴급구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는 하버마스의 가정은 따라서, 온건하게 표현하더라도, 매우 취약하고 불확실한 토대 위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긴급구호의 논리에 의존한 군사적 개입의 국제법적 정당화가 그 자체로서 논란의 여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²⁰⁾ ‘긴급구호’는 개입의 정당

19) 2000년 초에 채택된 나토의 새로운 전략적 구상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국들 사이에는 막후에서 국제연합의 위임 없는 개입이 예외로 남아있어야 하는가(유럽 측 입장), 아니면 규칙이어야 하는가(미국 측 입장)에 대해 격렬한 논란이 벌어졌으나 결국 공식 문서의 애매한 표현을 통해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바라는 미국 측 입장이 무사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Müller, 2003, 45).

20) 오래전부터 인도적 개입의 문제를 기독교윤리의 관점에서 고찰해온 로이터는 긴급구호가 무력사용의 위법성을 지양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 위법적인 것으로서 오직 초법적인 긴급상황에서만 처벌되지 않는 행위”이다. 긴급구호권을 행사하는 것은 따라서 보호받아야 할 재(財)들이 충돌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코소보전쟁의 경우 특정한 민족집단의 삶이 하나의 보호받아야 할 재이고 국가주권의 존중을 통한 세계평화가 또 다른 보호받아야 할 재인 것이다. 로이터는 두 재들이 동급이라고 간주하면서 “긴급구호권은 정당화하는 입장이 아니라, 기껏해야 변명의 처지에 있는 긴급상황의 의미에서 주어졌던 것”임을 지적한다. “따라서 나토의 무력사용은 법윤리적으로 단지 관용될 수 있을 뿐, 정

한 계기에 대해서만 말해줄 뿐 그 수행에 대해서는 말해주는 바가 없다는 점이다. 국내법적으로도 — 예컨대 인질범을 잡기 위해 군중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서는 안 되듯 — 모든 형태의 도움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처럼 인도적 개입의 경우에도 어떤 수단이 투입되어도 좋은가, 어떤 예견될 수 있는 행위결과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Schramme, 2001). 위에서 보았듯 하버마스 역시 이러한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 같지만 나토의 대유고 전쟁은 결국 그에게 국제관계가 ‘자연상태’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 협소한 국민국가적 경계를 넘어 세계시민권으로도 약하는 계기로서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그의 ‘낙관’적 견해는 무엇보다 미국 및 나토국들의 대외정책의 성격에 대한 긍정적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미국은 유엔이 별로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국제사회에서 초강대국의 질서과제를 떠맡았”으며 여기서 “인권은 정치적 목표의 평가에 있어 도덕적 가치지향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²¹⁾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예컨대 이란혁명 이후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 취한 정책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경우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미국은 사담 후세인이 대이란전에서나 쿠르드족에 대해 생화학무기를 사용하는 등 극심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을 때 후세인 정권을 지원하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중아시아 공화국들에서 미국은 그 새로운 동맹국들이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나라들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있다.”(아노브, 2002, 12)²²⁾

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도 다른 기준들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한한 것이다.”(Reuter, 2000, 82)

- 21) 이삼성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 측의 인도적 개입 동기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 반면 개입수단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결국 그 정당성은 개입의 장기적 결과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취한다(이삼성, 2001). 나토의 개입동기를 지정학적 이해라든가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 환원시켜 설명하는 단순화도 물론 피해야겠지만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나토 측이 표명한 도덕적 동기 또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 22) “미국의 ‘도덕의 나침판’이 올곧음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사례”(84)들에 대해서는 참조(츨스키, 2001). 하버마스 자신도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

이처럼 하버마스가 나토의 무력개입을 정당화하면서 기대고 있었던 전제들은 매우 취약하거나 근거가 없음이 드러났다. 이 지점에서 칼 슈미트의 다음과 같은 공격은 — 코소보전쟁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아프가니스탄전 및 대이라크전까지 경험한 — 하버마스에게 뼈아픈 일격이 되기에 충분할 것 같다. “전쟁을 살인행위라고 저주해놓고는 사람들에게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그 속에서 죽이고 죽임을 당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명백한 기만이다. 전쟁, 싸우는 자들이 죽음을 각오하는 일, 적의 편에서 있는 다른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죽이는 일, 이 모든 것에는 아무런 규범적 의미가 없다. 어떤 합리적 목적도, 아무리 올바르다는 규범도, 아무리 이상적이라는 강령도, 아무리 훌륭하다는 사회적 이상도, 그 어떠한 정당성이나 합법성도 인간들이 그것 때문에 서로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할 것이다.”(Schmitt, 1987, 49) 슈미트는 인권을 외치며 전쟁을 벌이는 자들이 “동시에 적을 도덕적이거나 다른 범주 속에서 깎아내리고 그를 방어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절멸되어야 할 괴물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바라본다. 그리하여 적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한계 속으로 물러나도록 해야 할” 존재만이 아니게 된다(Schmitt, 1987, 37). 하버마스도 언급했듯 슈미트에게서 인권 정치는 이런 식으로 치유될 수 없는 “악과의 전쟁”을 낳는 것으로 간주된다. 슈미트는 전쟁이 “평화주의적 어구”로써 정당화되는 상황에 대해 경고한다. 이는 전쟁의 규칙들이 효력을 잃게 만들고 상대방이 지닌 “적”으로서의 지위를 무시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때 전쟁은 동등한 상대들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지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상대를 향해 벌이는 일종의 “정벌이거나 처형, 경찰 조치”가 될 것이다(Lethen, 2000, 146). “상대는 더 이상 적이라 불리지 않으며 그 대신 법과 인간성의 외부에 놓여 있는 평화의 파

공하자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레마이네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은 반세기 동안 수행한 “국제법의 보장국 역할”을 이제 포기했다면서 “미국의 규범적 권위는 폐허 속에 놓여있다”는 단호한 판정을 내린다(Habermas, 2003).

괴자나 평화의 방해자로 간주된다.”(Schmitt, 1987, 77)

슈미트가 의도한 것이 모든 전쟁을 반대하는 무조건적 평화주의가 아니었음은 물론이다. 그가 인권정치를 비난한 근거에는 자유주의적 사회에 내재한 모순과 그 위선성을 폭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즉 이 사회에서는 “윤리적 규범과 합리적 목적, 사회적 이상의 깃발 아래 살인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사회는 살인행위에 대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군사적) 살인이 이처럼 아무런 규범적 의미를 지닐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슈미트 자신이 주장하는 것은 그 “실존적 의미”이다. 즉, 다른 사람을 물리적으로 절멸시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사람이 나의 실존형태를 마찬가지로 실존적으로 부정하려는 것에 대해 그것을 실존적으로 고수하고자 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적을 정의내리는 것은 그가 우리 자신의 존재형태를 부정한다는 사실이므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유사시에는 적을 물리적으로 절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Lethen, 2000, 133) 슈미트는 한편으로 제한된(engehegt) 전쟁의 가능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고전적 전쟁법과 이에 의거한 제한된 begrenzt 적 개념에 입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적 국가”의 맥락에서 “전체적 적”을 논하면서 적 개념에 썩어져 있던 고삐를 풀어버린다. 레텐은 슈미트가 1927년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 초판에서 아직 적을 분쟁 속에서 자신의 영토경계를 침범하는 침략자로서, 따라서 “실존의 고유한 방식에 대한 부정”으로서 파악하지만 1932년판에서는 이러한 영토 모델 대신 “심도 모델 Intensitätsmodell”을 도입한다고 지적한다. “우와 적의 구분은 결합이나 분리의, 연합이나 분열의 극단적 심도를 지칭하는 의미를 지닌다. 정치적 적은 도덕적으로 사악하거나 미학적으로 추할 필요가 없다(...). 그는 그냥 타자, 낯선 자이다. 그의 본질로 충분한 것은 그가 특히 강력한 의미에서 실존적으로 무언가 다른 것이고 낯선 것이라는 사실이다.”(Schmitt, 1987, 27) 심도 모델의 도입을 통해 이제 적 개념은 침략자 개념을 넘어서게 되

며 전장은 외부적 경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전의 가능성으로까지 확대된다(Lethen, 2000, 135). 이처럼 슈미트의 정치적 실존주의에 있어 폭력적 갈등의 허용범위는 위에서 살펴본 자유주의적 규범성이나 도덕성에 대한 비난의 외양과는 달리 오히려 훨씬 더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1933년 유대인을 내부적 적으로 설정하여 경계를 그음으로써 슈미트의 적 개념은 그 탄력적인 ‘활용가능성’을 여실히 입증했다(Lethen, 2000, 141-2). 그러나 이러한 실존주의적 구상에 내재한 폭력적 잠재성을 일단 차치한다면 슈미트가 도덕성의 외피를 쓰고 진행되는 전쟁의 위선성에 대해 가한 비판이라든가 그의 제한된 적 개념은 코소보전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하여 적어도 충분히 음미할 가치가 있다. 하버마스 스스로도 인권정치의 조치로서 정당화된 군사적 개입의 정치적 실패가 슈미트가 결국 옳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깊은 원인이라고 실토하지 않았던가(Habermas, 2001, 32). 물론 하버마스의 의도 자체는 슈미트가 인권정치에 대해 제기한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또한 슈미트처럼 도덕적 접근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코소보전쟁의 경과를, 그 시작단계에서부터 전쟁 진행상황에 이르기까지 ‘인도적’ 개입이 정당화되기 위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기준들 — 정의로운 이유, 정당한 권위,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무력사용, 개입의 적정성과 관련 보호받아야 할 재(財)의 경중(輕重) 판단, 평화를 목표로 한다는 올바른 의도, 성공에 대한 합리적인 전망, 사용된 수단의 적정성, 교전상대와 비교대상대의 구분, 대량살상무기 사용금지, 사회기반 시설 보호 등(Meyer, 2003) — 뿐만 아니라, 하버마스 자신이 제시한 기준들에 비추어보더라도 군사적 개입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결국 하버마스가 우려했듯 그가 “예기치 못한 결과들”이 발생하면서 “돌이켜 볼 때” 개입의 정당화는 근본적으로 의문시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Habermas, 2001, 32).²³⁾

23) 아펠은 나토가 실패한 결정적 원인이 개입행위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IV. 전쟁 이후: ‘인도적 개입’의 일상화?

보편적 인권이 주권국가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 국가적 주권의 위피가 외부로부터 폭력적으로 찢겨질 수도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부당한 것은 아니다.²⁴⁾ 그러나 코소보전쟁은 위에서 살펴본 듯 그 자체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국제질서와 평화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코소보는 나토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체첸전쟁은 아마도 그 첫 번째 사례일지 모른다. 나토 사무총장인 로버트슨 George Robertson은 체첸전이 발발했을 때 그곳의 러시아인들이 코소보에서 나토가 그랬던 것과 비슷한 범의식을 갖고 행동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얘기한 바 있다.²⁵⁾ 인도적 개입을 명분으로 한 전쟁의 정당화는 코소보 전쟁 당

있어서 일관성과 응집성이 결여돼 있었던 데”에 있다고 보고 “나토 개입의 전략적인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수행은 따라서 결코 인권수호를 위한 긴급 구호행동의 모범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 아펠은 “그러나 그러한 긴급구호행동이 국제적 범질서가 제대로 기능한다는 조건 하에서 장래에는 가능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한다(Apel, 2001).

- 24) 촘스키는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 사용을 금하고 있는 유엔헌장의 세계질서 규범들과 자국민을 억압하는 국가에 대항하기 위한 개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긴장관계”가 존재하며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문제는 이러한 긴장 관계로부터 생겨난 것”임을 지적한다. 촘스키는 부당하지 않은 무력개입의 예로 1978년에 있었던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1971년에 일어난 인도의 동파키스탄 침공을 들고 있다(촘스키, 2001, 63-91).
- 25) 코소보가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들에 대해서는 참조(알리, 2000, 22). 한편 <파이낸셜 타임스>는 연합군이 “한 나라의 시민을 방어하기 위해 그 주권국가 정부에 대해 군사작전을 일으킴으로써 중요한 전례를 만들었다. 이는 유엔안보리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그리하여 군사행동에 대한 법적 정당화를 크게 확대시켰다”며 코소보의 선례가능성을 오히려 환영하고 있다(켈리니코스, 2000, 59에서 재인용).

시의 나토 전략 속에서뿐만 아니라 2002년 9월 발표된 미국의 국가 안보전략 속에서도, 2003년 12월의 유럽연합 안보전략 문서에서도 발견된다. 2001년 10월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는 안 그래도 취약한 미국의 자기방어 명분이 사라지는 만큼 인권이 전면에 내세워졌다. 결국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이라크전 역시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못하면서 정권교체와 독재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인도적 주장”만을 들이댈 수 있을 뿐이었다.

여기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폭력의 배척에 있어 이렇게 독이 무너지는 사태는 향후 주요한 자원 확보나 지역질서 구축 등을 위한 나토의 개입도 정당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파괴의 논리 속에는 방해가 되는 다른 ‘독’도 잇달아 함께 허물어지면서 자기방어권에만 엄격하게 제한돼 있던 폭력 사용이 이제 스스로가 부여한 예방전쟁에의 권리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담겨있다(Paech, 2004).²⁶⁾ 이러한 맥락에서 빌레는 나토가 책임져야 할 특히 심각한 문제로 나토의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압력에 저항하려는 자는 그 가능성이 이제 오직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더 확고히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찾고 있다(Wille, 2000).²⁷⁾

논란이 되는 것은 또한 어떻게 예외적 경우임을 적절하게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예외로 남아야 할 개입행동의 사후처리 문제일 것이다. 무력개입이후에 분쟁의 근원

26) 고트(Richard Gott)는 전쟁이 진행중이던 1999년 5월 20일자 <가디언>의 기사를 통해 “인도주의적 개입주의”가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독립국가들과 민중들의 문제에 거리낌 없이 개입했던 지난 세기의 식민주의로 후퇴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제국주의시대의 도래를 우려하고 있다(캘리니코스, 2000, 51에서 재인용).

27) 타리크 알리 역시 나토의 공격이 핵무기를 일방적으로 폐기한 세계 유일의 나라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다시 과거의 핵 보유 국가로 되돌아갈 것을 결의하게 만들었으며 러시아 군산복합체가 그 때까지 관찰시키지 못했던 핵 전력의 현대화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한다(알리, 2000, 166).

적 요인들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는다면 ‘전쟁이후’는 다시 ‘전쟁이전’으로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보편적 인권을 위한 개입’은 그 동기의 순수성이 인정되더라도 목표와 관련해 완전히 실패한 행위로 판정받거나, 아니면 사실은 ‘특수한 이익을 위한 침략’으로서 결국 슈미트의 테제 “인간성, 야수성”이 옳지 않았는가라는 의혹을 사게 될 것이다.

세르비아의 항복 이후 알바니아 난민들은 다시 대부분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나 이제 그곳에서는 나토와 유엔의 관용 하에 조직범죄뿐만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비알바니아계에 대한 ‘인종청소’가 진행되었다. 칼리치에 따르면 1999년 6월 이후 약 24만 명의 비알바니아계 주민들, 특히 세르비아계와 짝지족인 로마계 주민들이 코소보를 떠나야만 했다 (Calic, 2004). 코소보 해방군을 무장해제시키고 다문화적인 코소보를 복원시키겠다는 공식적인 선언과는 달리 미국과 독일은 코소보 수비군을 지원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나토 전쟁 이후 코소보에서 테러를 재정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은 살인과 폭력행위가 코소보 수비군의 소행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과거 코소보 해방군 전사들로 구성된 수비군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개입군은 평화를 창출해야 한다는 본연의 의무에 따라 이전에 억압받던 소수집단이 자신을 억압했던 자들에 대해 복수하는 것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는 방관하거나 외면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코소보에서 진행된 조직적인 폭력 및 축출행위가 외국군에 의해 지지를 받은 것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외국군은 이러한 행위를 적어도 암묵적으로 허용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슈츠는 다문화적인 코소보를 복원시킨다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고까지 주장한다. 아직도 이를 믿고 있는 자들은 나토가 1999년 “인도적 이유”에서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자들뿐이라는 것이다(Schütz, 2004).²⁸⁾ 이러한 견해는 물론 성급한 것일

28) <파이낸셜 타임스>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세르비아에 투하되는 모든

수도 있다. 보스니아에서의 ‘인종청소’가 남긴 심각한 상처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난 이후 상당수의 난민들은 데이튼 협약에 의거 다시 이전 거주지로 귀환하여 다소 불안한 상태에어나마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 발칸반도에서 수백 년간 가능했던 다민족간의 평화로운 공존 경험 또한 비관적인 전망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슈츠의 의도와는 달리 그의 주장은 자칫 ‘발칸의 안정이 오직 민족적 분리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도 있는데 이는 인권 및 국제법적 원칙과도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인종청소’를 사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전 세계에 걸쳐 그 파장을 예측할 수 없는 선례를 낳는 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코소보 전쟁이 종결된 후 5년이 지난 오늘날에까지 국제사회는 코소보에서 난민들의 귀환과 소수민족 보호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²⁹⁾ 또한 민족분쟁의 불씨는 여차하면 발칸의 또 다른 화약고인 이웃 마케도니아로 옮겨 붙을 태세이다.

미국의 인권을 표방한 개입정책의 저변에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오직 시장경제와 기업의 자유를 토대로 해서만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사실은 대테러전쟁의 일환으로 수행된 아프가니스탄전과 이라크전을 경험한 후가 아니더라도 익히 알려져 있던 바이다(Hirsch, 2001). 이러한 유의 인권정치는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전 세계적으로 관철시키려는 이해관계를 포장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폭탄과 코소보에서 자행된 모든 인종청소를 볼 때, 세르비아인들과 알바니아인들이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츨스키, 2001, 86에서 재인용)

- 29) 전쟁이 끝나고 거의 5년이 경과한 2004년 3월에도 코소보에서는 비알바니아계 소수주민들에 대한 난동이 벌어지는 등 박해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과거 보스니아에서 세르비아 무장세력들이 ‘인종 청소’를 목적으로 타민족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문화적, 종교적 건축물들 — 1,000개 이상의 모스크와 500개 이상의 성당 등 — 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훼손한 것과 마찬가지로 1999년 이후 국제적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코소보에서는 극단적 알바니아 민족주의자들이 체계적으로 세르비아 정교 교회와 사원들을 파괴하고 있다(Calic, 2004).

하버마스가 무력개입을 통해서라도 인권을 관철시킴으로써 인권을 세계시민권으로까지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은 분명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열강들에 의해 표방되는 인권정치와 동상이몽의 관계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기는 어떻든 하버마스의 코소보 사태에 대한 무력개입 옹호는 지성적 오류였다는 판정을 면하기 힘들 것 같다. 위에서도 서술되었듯 ‘인도적 개입’은 ‘긴급구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정반대의 효과를 낳았으며 장기적으로도 강대국의 침략으로부터 약소국을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었던 침략전쟁 금지와 같은 국제관계에서의 몇 안 되는 역사적 진보가 다시 퇴보하는 계기가 되었다.³⁰⁾ ‘세계시민적 상태’의 도래를 고대하던 하버마스는 전쟁을 전후해 서구언론을 지배했던 편파적이고 감정을 자극하는 언론보도에 현혹되어 판단력이 마비되었던 것 같다.³¹⁾

30) 하버마스 스스로가 20세기 전반까지 인류가 겪은 재앙을 회고하면서 “침략 전쟁 금지와 인간성에 반한 범죄의 배척을 담고 있는 UN 인권선언이 공적으로 인정된 규약들의 미약하나마 규범적인 기속력을 얻을 수 있었던”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위안을 얻고 있는 것 같다(Habermas, 2003, 222). 이 문제와 관련해 루이스 헨킨(Louis Henkin)의 지적은 여전히 경청할 만하다. “무력 사용에 대한 금지 조항을 무시하려는 움직임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력의 사용을 합법화하지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고 위험하다. 인권 유린은 정말로 너무 흔한 일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거의 모든 국가가 모든 국가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법이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고, 다른 불의도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그러나 침략 행위에 문을 열어 주는 수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불법화하고 무력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국제법의 중요한 전진을 파괴하는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츄스키, 2001, 90-91에서 재인용)

31) 물론 하버마스의 개입옹호가 ‘일시적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오류였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설명일 수 있다. 그의 시민사회, 나아가 세계시민사회에 대한 구상은 지배적인 사회관계를 온존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도덕주의 내지 유토피아주의의 비판을 면할 수 없을 텐데 마찬가지로 그의 세계시민권에 대한 구상도 현존하는 지배관계 및 권력관계라는, 그 실현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현실적 조건에 대한 성찰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하버마스가 자신의 담론이론을 통해 전개한 인권과 그 논리적 귀결로서 세계시민권의 확립 요구는 보편주의적 인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도덕적 제국주의”라거나 “문화제국주의의 기호라는 비판을 극복할 수 있는 초석을 제공”(박구용, 2003, 210-211)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코소보사태에의 무력개입 옹호를 통해 스스로 다시 노골화되는 제국주의적 패권정책의 담론적 장식물로 전락한 셈이 되고 말았다.³²⁾ 코소보사태 이후의 발전들은 하버마스가 기대하는 세계시민권의 세계법적 정착이 아니라 국제질서의 규제되지 않는 ‘자연상태’로의 후퇴가 인류가 당면한 현실임을 예감케 한다.³³⁾

비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성급하고 ‘순진한’ 개입옹호의 좀더 깊은 이유가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버마스의 시민사회 및 세계시민사회 구상에 대한 비판으로는 참조(주정립, 2003).

- 32) 국제법학자인 패히(Norman Paech)는 19세기에 서구 제국주의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 식민정책을 벌이는 과정에서 기독교 선교가 이데올로기적 하부구조로서 담당할 역할을 제식민화가 진행 중인 오늘날 바로 인권이 담당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19세기 당시 우월한 것으로 설파되었던 기독교 문명의 자리에 이제 서구의 인권을 중심으로 한 가치공동체가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패히에 따르면 이러한 “가치공동체에서 인권과 석유를 분리하는 자는 바보”에 불과하다(Schulz, 2001로부터 재인용).
- 33) 코소보 전쟁을 정당화했던 하버마스는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 벌이는, 마찬가지로 유엔의 승인을 얻지 못한 전쟁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그 불법성을 문제 삼고 있다. “불법적인 전쟁은 그것이 설령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성과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국제법에 반하는 행위이다.” 하버마스는 이제 미국과 그 연합군이 국제법을 위반하며 이라크에 대해 벌인 전쟁을 다른 나라들도 선례삼아 주저 없이 따라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Habermas, 2003). 그러나 이러한 비판과 우려는 이미 코소보전쟁에 대해 유효한 것이 아니었을까?

참고문헌

- 박구용, 2003, 『우리 안의 타자. 인권과 인정의 철학적 담론』, 서울: 철학과 현실사.
- 타리크 알리 외, 2000, 『전쟁이 끝난 후. 코소보를 둘러싼 나토의 발칸 전쟁이 남긴 것들』, 서울: 이후.
- 타리크 알리, 2000, 『머리말: 전쟁이 끝난 후』, 타리크 알리 외, 2000, 『전쟁이 끝난 후』.
- _____, 2000, 『나토의 발칸 성전』, 타리크 알리 외, 2000, 『전쟁이 끝난 후』.
- 이삼성, 2001, 『세계와 미국. 20세기의 반성과 21세기의 전망』, 서울: 한길사.
- 알렉스 캘리니코스, 2000, 『인도주의적 개입의 이데올로기』, 타리크 알리 외, 2000, 『전쟁이 끝난 후』.
- 주정립, 2003, 『세계사회에 대한 정치철학적 전망: 19세기와 현대의 세계화 비교』, 『대한정치학회보』 제11집 2호.
- 노암 촘스키, 2001, 불량국가, 『미국의 세계 지배와 힘의 논리』, 서울: 두레.
- Altvater, Elmar, 1999, “Menschenrechte und Bomben.” Ulrich Albrecht/Paul Schäfer (eds.). *Der Kosovo-Krieg. Fakten, Hintergründe, Alternativen*. Köln: PapyRossa.
- Amnesty International, 1998, “Aktuelle Menschenrechtssituation in der Provinz Kosovo.” *Asyl-info* 5/98.
- Apel, Karl-Otto, 2001, “Das Spannungsfeld zwischen Ethik, Völkerrecht und politisch-militärischer Strategie in der Gegenwart. Philosophische Retrospektive auf den Kosovo-Konflikt.” M. Niquet et al. (eds.). *Diskursethik*.

- Grundlegungen und Anwendungen*. Würzburg: Königshausen & Neumann. 205-218.
- Blanke, Thomas, 1999, "Recht und Moral im Kosovo-Krieg. Eine Auseinandersetzung mit Jürgen Habermas." *Kritische Justiz*. 3/1999. 410-425.
- Brock, Lothar, 2000, "Weltbürger und Vigilanten. Lehren aus dem Kosovo-Krieg."(<http://homepage.hamburg.de/weltbuerger-gruppe/kosovo.html>) (검색일: 2003. 6. 5)
- Calic, Marie-Janine, 2004, "Der Balkan findet keine Ruhe" (Dokumentation). *Frankfurter Rundschau* v. 28. 8. 2004.
- Czempiel, Ernst-Otto, 2001, "Vorbeugen, nicht nachkarten", (Dokumentation) *Frankfurter Rundschau* v. 9. 5. 2001.
- Denninger, Erhard, 1999, "Einladung zum Mißbrauch" (Interview mit dem *Spiegel* v. 29. 2. 1999). p.222.
- Habermas, Jürgen, 1983, *Moralbewußtsein und kommunikatives Handeln*. Frankfurt/M.: Suhrkamp.
- _____, 1991, *Erläuterungen zur Diskursethik*. Frankfurt/M.: Suhrkamp.
- _____, 2001, *Zeit der Übergänge. Kleine Politische Schriften IX*. Frankfurt/M.: Suhrkamp.
- _____, 2003, "Aus Katastrophen lernen? Ein zeitdiagnostischer Rückblick auf das kurze 20. Jahrhundert." Jürgen Habermas. *Zeitdiagnosen*. Frankfurt/M.: Suhrkamp.
- _____, "Was bedeutet der Denkmalsturz? Verschließen wir nicht die Augen vor der Revolution der Weltordnung: Die normative Autorität Amerikas liegt in Trümmer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v. 17. 4. 2003.
- Hänsel, Heiko, Heinz-Günter Stobbe, 2002, *Die deutsche Debatte um den Kosovo-Krieg: Schwerpunkte und Ergebnisse*.

- Berlin: Heinrich Böll Stiftung.
- Hauchler, Ingomar, et al., 2003, "Der Irakkrieg: Zehn Thesen zu einer weltpolitischen Zäsur." Dirk Messner, Franz Nuscheler (eds.). *Globale Trends 2004/2005. Fakten. Analysen. Prognosen.* Frankfurt/M.: Fischer Taschenbuch Verlag.
- Hirsch, Joachim, "Die Globalisierung der Menschenrechte. Konjunktur eines Dogmas." *Freitag* v. 19. 1. 2001.
- Kersting, Wolfgang, 2000, "Bewaffnete Intervention als Menschenrechtsschutz." Reinhard Merkel (ed.). *Der Kosovo-Krieg und das Völkerrecht.* Frankfurt/M.: Suhrkamp.
- Lethen, Helmut, 2000, "Carl Schmitt: Der Begriff des Politischen (1927)." Walter Erhart, Herbert Jaumann (eds.). *Jahrhundertbücher. Große Theorien von Freud bis Luhmann.* München: Verlag C. H. Beck.
- Lutz, Dieter S., 1999, "Frieden - Meisterwerk der Politik, oder: War der Kosovo-Krieg wirklich unvermeidbar?." Hamburg: IFSH.
- Meyer, Berthold, 2003, "Gut gemeint oder gut - wie humanitär sind 'humanitäre Interventionen'?" *HSFK Standpunkte. Beiträge zum demokratischen Frieden.* Nr. 8/2003.
- Müller, Harald, 2002, "Unkritisch zu Diensten. Zwischen Information, Inszenierung und Zensur." (Dokumentation) *Frankfurter Rundschau* v. 13. 11. 2002.
- _____, 2003, *Supermacht in der Sackgasse? Die Weltordnung nach dem 11. September.* Frankfurt/M.: Fischer Taschenbuch Verlag.
- Mutz, Reinhard et al., (eds.). *Friedensgutachten 2000,* Münster-Hamburg: LIT Verlag.
- Paech, Norman, 2004, "Als die Dämme brachen. Jugoslawien 1999 - Irak 2003: Vom Recht auf 'humanitäre Interventionen'"

- zum Recht auf präventive Kriege” *Freitag* v. 7. 5. 2004.
- Popov, Nebojsa, 1999, “Serbiens stumme Opposition.” *Le Monde diplomatique* v. 11. 6. 1999.
- Reuter, Hans-Richard, 2000, “Die ‘humanitäre Intervention’ zwischen Recht und Moral: Rechtsethische Anmerkungen aus Anlaß des Kosovo-Krieges.” Reinhard Mutz et al. (eds.). *Friedensgutachten 2000*.
- Roth, Roland, 2000, “Auf dem Wege zur transnationalen Demokratie? Vorläufiges zum Beitrag von Protestmobilisierungen und Nichtregierungsorganisationen.” Achim Brunnengräber et al. (eds.). *NGOs als Legitimationsressource. Zivilgesellschaftliche Partizipationsformen im Globalisierungsprozess*. Opladen: Leske+Budrich. 27-50.
- Schmitt, Carl, 1987, *Der Begriff des Politischen* (1932). Berlin: Duncker&Humblot
- Schramme, Thomas, 2001, “Humanitäre Intervention: eine contradictio in adjecto?.” Michael Anderheiden et al. (eds.). *Globalisierung als Problem von Gerechtigkeit und Steuerungsfähigkeit des Rechts*. Stuttgart: Verlag Wiesbaden. 97-119.
- Schulz, Eberhard, 2001, “Krisen und Kriege. Menschenrechtsimperialismus.” *Ossietzky* 12/2001.
- Schütz, Cathrin, 2004, “Aus den Trümmern Jugoslawiens. Die Militarisierung deutscher Außenpolitik im Spiegel der Zerschlagung eines Staates.” *Neues Deutschland* v. 26. 3. 2004.
- Tommaso, T., di, G. Scotti, 1999, “Sechzig Jahre ‘ethnische Säuberung.’” *Le Monde Diplomatique* v. 22. 5. 99.
- Wille, Wilhelm, 2000, “Der Kosovo-Krieg als Kontext friedensethischer Überlegungen.” <http://www.friederle.de/ethik/ffe/wikoso.htm> (검색일: 2004. 10. 15)

ABSTRACT

Human Rights and Sovereignty in the Age of Globalization:
Habermas' Argument on the Kosovo War

Chu, Choeng-Lip

This work looks into the problem of 'the human rights (Weltbürgerrechte) and the sovereignty of the state in the age of the globalization', which has been raised by the Kosovo War, and the related problem whether the 'humanitarian intervention' is legitimate. Especially, in this paper these problems are discussed with regard to the argumentation of Jürgen Habermas. In the first place, the debate on the war is considered briefly. I pay special attentions to whether proponents and opponents of the intervention actually have used 'highly transparent normative language', and whether 'the emotional and biased tones' could really not be found in the public, which Habermas noticeably believed so. I will show what Habermas believed was not the case. In the next place, I examine critically the attempt of Habermas to legitimize the war. The criteria for the legitimacy of the intervention, postulated by Habermas himself, is confronted with its real development. I will make Carl Schmitt, who was incriminated by Habermas for amorality, come to words in order to make the problem of Habermas' argument clear. In the final place, this work critically reflects on the consequences of the Kosovo War, in regard to the possible meanings for the human rights and the sovereignty of the state in the future. The developments after the war

suggest that we are facing not the establishment of the cosmopolitan state, as Habermas wished, but the relapse of the world order into an unregulated natural state.

Key words: human rights, sovereignty of the state, humanitarian intervention, Kosovo War, moralization



서평

박홍규 철학이 남긴 헬라스 사유의 유산 / 김재홍 __ 269

